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2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4.

발 의 자:이수진 · 민병덕 · 이기헌

문진석 · 송옥주 · 김정호

민형배 · 송재봉 · 서미화

박홍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, 호소(湖沼)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·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,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·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·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(藻類), 유류(油類)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 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, 시·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 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

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 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등). 법률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"오염되어"를 "조류(藻類), 유류 등으로 오염되어"로, "조치를"을 "조치 또는 그 행위를 위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를"로, "시·도지사에게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지사의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의 일시 중지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이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보상할 수 있다.

제21조의5제1항 중 "조류(藻類)의"를 "조류의"로 한다. 제82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오염된 공공수역에서	제21조의2(오염된 공공수역에서
의 행위제한) ① 환경부장관은	의 행위제한) ①
하천·호소등이 <u>오염되어</u> 수산	조류(藻類), 유
물의 채취 • 포획이나 물놀이,	류 등으로 오염되어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	
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	
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ㆍ	
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・	
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	
는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조	
<u>치를</u> 할 것을 <u>시·도지사에게</u>	<u></u> 조치 또는
권고할 수 있다.	그 행위를 위한 영업을 일시적
	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를-
	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</u>
	<u>•군수•구청장에게</u>
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	2
<u>시·도지사는</u> 특별한 사유가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	<u> 구청장은</u>
여야 한다.	
	,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	③

시 · 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 ·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제21조의5(조류에 의한 피해 예 제21조의5(조류에 의한 피해 예 방)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(藻 類)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 천 · 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

- <u>시</u>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<u>• 구청장의</u>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
수・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 <u>항에 따른 영업의</u> 일시 중지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 실을 보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 거나 확대시킨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거나 감 액하여 보상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방) ① -----조류의--

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·호소등을 수원(水源)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82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· 1의2. (생략)

<신 설>

2. ~ 8. (생략)

③・④ (생 략)

<u>.</u>	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제82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	
(2)	
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	
1의3.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	
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</u>	
·구청장의 조치 또는 같은	
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	
의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	
중지하지 아니한 자	
2. ~ 8. (현행과 같음)	
③·④ (현행과 같음)	